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18-33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고시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4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자렌지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무선전력전송 기준 보다 완화된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안 제8조, 별표 5)

나.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1 GHz 이상의 전자렌지에 적용되는 과도한 침투치 기준을 삭제하고 가중치 기준을 보완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개정 (안 제3조 제1항,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고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 [참조 : 전파환경안전과,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파환경안전과(전화 : 061-338-4512, FAX : 061-338-4519, E-mail : jkyang1@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1. 개정이유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자렌지의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선전력전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무선전력전송 기준 보다
완화된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의 기준을 별도로 마련
(안 제8조, 별표 5)

나.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1 GHz 이상의 전자렌지에 적용되는 과도한 침투치
기준을 삭제하고 가중치 기준 보완하는 전자파 장해방지 기준 개정
(안 제3조 제1항,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3호 (2)를 모두 삭제하고 (3) 표 내부의 비고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허용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중치 측정은 (1)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값에 대하여 다음의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 1 005 MHz ~ 2 395 MHz
- 2 505 MHz ~ 6 125 MHz (5 720 MHz ~ 5 880 MHz 대역은 제외)
- 6 125 MHz ~ 8 575 MHz
- 8 575 MHz ~ 11 025 MHz
- 11 025 MHz ~ 13 475 MHz
- 13 475 MHz ~ 15 925 MHz
- 15 925 MHz ~ 17 995 MHz

가중값 측정을 위한 스펙트럼분석기(EMI 수신기)는 첨두값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주파수를 중심주파수로 하고 10 MHz의 스패ن(Span)으로 설정하여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한다.

별표 5의 제1호 라목 중 “가정용”을 “10 W 이하 가정용”으로 하고 현행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30 MHz 이하대역 10 W 초과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 방사성 방해 기준

(1) 방사성 방해 기준

주파수 범위 (MHz)	3 m 거리에서 측정된 준침두값 허용기준 (dB(μA/m))
0.009 ~ 0.070	69(의도적 전자파 제외 ^(주1))
0.070 ~ 0.148 5	69 ~ 39 ^{(주1), (주2)}
0.148 5 ~ 4.0	39 ~ 3 ^{(주1), (주2)}
4.0 ~ 30	3

(주1) 무선전력전송용 송신 주파수 대역(의도적 전자파)에 대한 허용기준은 전파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2) 허용기준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비고)
1.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에 라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30 MHz 이상 대역의 방사성 방해 기준은 제1호 다목의 방사성 방해 기준을 적용하고, 전자파 전도기준은 제1호 가목 (1)의 (가) 전자파 전도기준을 적용하며, 산업·과학·의료용 주파수 대역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 공포 한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 장해 방지 기준(제6조 제1항 관련)</p> <p>1. ~ 2. (생략)</p> <p>3. 전자파 방사성 방해 허용기준 (1 ~ 18 GHz의 주파수 대역)</p> <p>가. 2종 ISM 기기</p> <p>(1) 생략</p> <p>(2) <u>연속파(CW)형 이외의 요동</u> <u>방해를 발생시키며 400 MHz</u> <u>이상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u> <u>2종 B급 기기의 전자파 방사성</u> <u>방해 침투값 허용기준</u></p> <p>(3) 연속파(CW)형 이외의 요동 방해를 발생시키며 400 MHz 이상의 주파수에서 동작하는 2종 B급 기기의 전자파 방사성 방해</p>	<p>[별표 3] 산업·과학·의료용 등 고주파 이용기기류의 전자파 장해 방지 기준(제6조 제1항 관련)</p> <p>1. ~ 2. (좌동)</p> <p>3. (좌동)</p> <p>가. (좌동)</p> <p>(1) (좌동)</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3) (좌동)</p>

가중치 허용기준

(비고)

2. 이 허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2개의 중심주파수 주위에서만 측정을 필요로 한다. 즉, 1 005~2 395 MHz 대역에서의 가장 높은 방출과 2 505~17 995 MHz 대역(5 720~5 880 MHz 대역은 제외)에서의 가장 높은 침투값 방출, 이들 2개의 중심주파수에서 스펙트럼 분석기의 스패ן(span)을 10 MHz로 두고 측정한다.

[별표 5] 가정용 전자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8조 관련)

1. (생략)

가. ~ 다. (생략)

라. 30 MHz 이하대역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방사성

(비고)

2. 이 허용기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중치 측정은 (1)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값에 대하여 다음의 주파수 대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 1 005 MHz ~ 2 395 MHz
- 2 505 MHz ~ 6 125 MHz
(5 720 MHz ~ 5 880 MHz 대역은 제외)
- 6 125 MHz ~ 8 575 MHz
- 8 575 MHz ~ 11 025 MHz
- 11 025 MHz ~ 13 475 MHz
- 13 475 MHz ~ 15 925 MHz
- 15 925 MHz ~ 17 995 MHz

가중값 측정을 위한 스펙트럼분석기(EMI 수신기)는 침투값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주파수를 중심주파수로 하고 10 MHz의 스패ן(Span)으로 설정하여 전기장의 세기를 측정한다.

[별표 5] 가정용 전자기기 및 전동기기류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제8조 관련)

1. (좌동)

가. ~ 다. (좌동)

라. 30 MHz 이하대역 10 W 이하 가정용 무선전력전송기기 방사성

방해 기준

<신설>

방해 기준

마. 30 MHz 이하대역 10 W 초과

가정용 무선전력전송 기기

방사성 방해 기준

(1) 방사성 방해 기준

주파수 범위 (MHz)	3 m 거리에서 측정된 준침투값 허용기준 (dB(μA/m))
0.009~0.070	69(의도적 전자파 제외 (주1),(2))
0.070~0.148 5	69 ~ 39 (주1),(2)
0.148 5~4.0	39 ~ 3 (주1),(2)
4.0~30	3

(주1) 무선전력전송용 송신 주파수 대역(의도적 전자파)에 대한 허용기준은 전파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2) 허용기준은 주파수의 대수적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비고)
1. 10 W 초과 무선전력전송 기기에 라목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30 MHz 이상 대역의 방사성

방해 기준은 제1호 다목의

방사성 방해 기준을 적용

하고, 전자파 전도기준은

제1호 가목 (1)의 (가) 전자파

<p><u>마.</u> 디지털 도어록 전자파 장애 방지 기준</p>	<p>전도기준을 적용하며, 산업·과학·의료용 주파수 대역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p> <p><u>바.</u> (좌동)</p>
---------------------------------------	---